



시설사업단 운영위원회규정

[제목개정 2022. 6. 1]

제정일	2020. 1. 1
개정일	2023. 2. 1
개정차수	3차
담당부서	시설사업단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의 종합적인 운영에 관한 계획, 분석 및 심의를 위한 시설사업단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2. 6. 1)
- 제 2조 (역할) 본 운영위원회는 교육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수익 확보 등을 위해 국제교류센터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유지운영으로 대학발전의 기틀을 다진다.
- 제 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1.10. 1)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설사업단장이 되고, 위원은 각 행정처장 및 시설사업단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21.10. 1, 2022. 6. 1)
-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- 제 4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.
-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(개정 2021.10. 1)
- 제 5조 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및 심의한다. (개정 2023. 2. 1)
1. 대학 내 유희교지 및 유희교사에 수익창출을 위한 위탁관리 업무(국제교류센터 내의 골프장, 웨딩홀, 수영장 등의 임대 및 산학협약 등) (개정 2023. 2. 1)
 2. (삭제 2023. 2. 1)
 3. (삭제 2023. 2. 1)
 4. 국제교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숙사, 체육관, 대강당 등에 관한 정책자문 (신설 2022. 6. 1, 개정 2023. 2. 1)
 5. 대학 내 신축공사(민자유치 포함) 등의 계획 및 추진에 수반되는 사항 (신설 2022. 6. 1)
 6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위원장이 제안하는 시설사업단에 필요한 사항 (개정 2022. 6. 1)
- ② 위원회는 필요시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을 발의할 수 있다.
- 제 6조 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22. 6. 1)
- 제 7조 (사무 관장) ① 위원회의 사무는 시설사업단에서 관장한다. (개정 2022. 6. 1)
-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시설사업단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 (개정 2022. 6. 1)
- 제 8조 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